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2024년도 경남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연구실적평가 소홀에 따른 연구수당지급 부적정	5
2) 과도한 식비 지출 등 회의비 집행 부적정	10
3) 규정 개정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14
4) 정·현원 관리 부적정	19
5)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22
6) 경남지역 ○○○○ 육성사업 및 ○○○○ R&D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28
7)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 미흡	3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4. 1. 11. 부터 1. 17.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4. 1. 17.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2000년 6월 28일 경남테크노파크 설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 설립목적 :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2. 조직 및 예산 (24. 1월 기준)

- 조 직 : 2실, 2단, 8본부
 - (실) 윤리경영실, 경영지원실
 - (단)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 (본부) 미래자동차본부, 지능형기계본부, 항공우주본부, 조선해양본부, 나노융합본부, 에너지바이오본부, 방위산업본부, 정보산업진흥본부
- 인 력 : 정원 190명 / 현원 188명

구 분	계	원장	부서장	연구직/사무직/기술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190	1	10	179	11	34	49	69	16
현원	188	1	10	177	8	29	48	69	23

- 예산규모 : 266,212백만 원

3. 주요 사업

- 비대면 기업애로 지원 운영을 통한 이노카페 활성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경남테크노파크

- 연구실적평가 소홀에 따른 연구수당지급 부적정
- 과도한 식비 지출 등 회의비 집행 부적정
- 규정 개정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 정·현원 관리 부적정
-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 경남지역 ○○○○ 육성사업 및 ○○○○ R&D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 미흡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시정

제 목 연구실적평가 소홀에 따른 연구수당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실)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과제, 기업 및 기관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연구수당을 편성하여 최근 3년간(’21년~’23년) 359건 36억 23백만 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에 따라 “참여 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하고,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하며, 같은 기준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에 의거,

제5조 제1항¹⁾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지급 규정」 제5조(평가)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및 기간, 기여도, 과제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연구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는 과제참여율 및 참여기간 50%, 기여도 30%, 연구성과 20%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의 최종 확정은 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사업비 운영지침」 제9조(연구수당 지급)에 따라 연구수당은 개인별 총 수령액이 연봉의 20% 이내²⁾로 사업별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A등급: 탁월, B등급:우수, C등급:보통, D등급:미흡) 평가하고, 과제 책임자는 개인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방법을 계약연봉월액³⁾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지침 제11조(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 지급의 제한)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제 참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퇴직자(과제종료 후 퇴직)가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3. 퇴직자(과제종료 후 퇴직)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과제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나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과제가 불성실 등의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된 경우
6. 기여도가 10점 이하 및 연구성과가 5점 이하인 경우
7.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중징계처분자 등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3항 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책기획단(정책기획단-846호(2022.3.2.))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연구수당 평가 및 지급계획 수립 시 개인별 지급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기획팀장의 사전 협조를 받도록 안내함

3) 계약연봉월액 = 「개인 계약연봉월액 × 지급률」, 과제 책임자는 평가등급별 지급률 구간을 설정

※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42조의 1(성과급 지급 제외)

1. 제83조의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중징계(제88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

- 인사관리 규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중사하게 하되, 연봉 월액(연봉/12월)의 10분의 1을 감한다. 단,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감액한다. < 2023.12.04 >
 3. 정직은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23.01.06. >
 4. 삭제 < 2013.02.01. >
 5. 해임은 그 직에서 배제하며 3년간 임용을 제한함. < 2013.02.01. >
 6. 파면은 그 직에서 배제하며 5년간 임용을 제한함. < 2013.02.01. >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중략)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및 참여기간, 기여도, 과제성과를 반영한 연구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중징계(감봉, 정직, 해임, 파면) 처분 대상자 등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평가기준 불분명에 따른 연구실적평가 부적정

그런데 ○○○○단에서 추진한 ‘○○○ ○○○○○○ 구축사업(2021. 5. ~ 2023. 3., 도비지원 230백만원)’의 경우, 2021년(참여기간 2021. 5. 1. ~ 2022. 4. 30.) 참여연구원 8명을 대상으로 총 5백만 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평가등급 A는 지급률 30~40%, B는 지급률 20~30%, C는 지급률 10~20%, D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단장의 경우 평가등급을 C로 받았음에도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에는 참여연구원 5명을 대상으로 총 4백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평가등급 A는 지급률 35~45%, B는 지급률 25~35%, C와 D는 미지급으로, 같은 사업임에도 전년도 지급기준을 다르게 수립하였고, 사업참여기간을 전년도 지급 이후인 2022. 5. ~ 2022. 11.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 등 4명에 대하여는 참여기간을 2021. 5. 1. ~ 2022. 11. 30로, ○○○는 2022. 1. 1 ~ 2022. 11. 30로 기재하여, 7개월의 참여기간에 대한 점수를 19개월로 부적정하게 부여한 뒤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2023에는 사업참여기간을 전년도 지급기준 이후인 2022. 12. ~ 2023. 3.로 설정하여 4개월에 대한 연구성과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 등 5명에 대해 2021. 5. 1. ~ 2023. 3. 30.로 참여개월을 기재하고(○○○ 연구원의 경우, 2022. 1. 부터 해당 과업 참여) 잘못된 점수를 부여하여 연구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A 및 B 등급을 받은 3명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② 연구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연구수당 지급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2023년 ○○○○○○○○○사업’에 대한 참여연구원 10명에 대해 총 2천만 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 등 9명4)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2023. 1. 1. ~ 2023. 12. 31.(12개월)로 설정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평가등급 B(75)를 받은 ○○○(○○○○○ 4급)에게는 2,300,000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는 2023. 9. 7. ~ 11. 6.까지 2개월 ‘정직’ 처분5)을 받은 자로서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이고, 「사업비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에게 연구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4) ○○○, ○○○, ○○○, ○○○, ○○○, ○○○, ○○○, ○○○, ○○○ : 참여기간 2023.1.1.~2023.12.31.(12개월),
○○○ : 참여기간 2023.11.1.~2023.12.31.(2개월)
5) 처분통지 : 2023. 9. 6.(징계심의 2023. 9. 4.)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① 「사업비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연구수당 지급 평가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단 ○급 ○○○, ○○○○단 ○급 ○○○, 실무책임자 ○○○○단 ○급 ○○○, 감독책임자 ○○○○단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책임자 ○○○○단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수당 230만 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기관경고 및 주의

제 목 과다한 식비 지출 등 회의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회의에 필요한 다과, 식대 등 제반비용을 각 사업별 예산에 따른 회의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테크노파크 「회의비 사용지침」 제2조에 따라 회의비는 회의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회의비 집행 시 투명성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의비 사용은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요령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에 따른 공문 또는 관련 자료, 회의 결과보고, 회의참석자 서명록, 카드 전표 및 회의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의록이 없거나 회의와 관련없이 사용한 회의비,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과 맞지 않게 사용한 회의비는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2021.6.)에 ‘회의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같은 규정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실비)로, 매식비는 급량비 기준단가 이내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기준」(행정안전부(2022.7.)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는 [표 1]과 같이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회의비에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1]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회의비 관련 신·구 대비표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 관리비	4. 회의비 <신설>	공통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 관리비	4. 회의비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은 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공통

[출처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한편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표 2]와 같이 회의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면서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적시하였고, 테크노파크에서 ○○○○실에서도 기관내 전 부서에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다.

[표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업무추진비 설명 내용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출처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65]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회의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에 따른 다과 및 식사제공 비용은 급량비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공문, 회의결과보고, 회의참석자 서명록 및 카드전표 등 회의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지출증빙 내역과 다른 회의비 부당집행

테크노파크 ○○○○○팀에서는 ‘○○○○○본부 업무회의 후 중식제공’(○○○○○본부-○○○호. 2023. 1. 31)으로 72,000원을 사후 품의를 내면서, 회의일시는 2023. 1. 11.(수)(시간 미기재), 참석자는 센터 담당자 및 현장실습생 등 9명, 회의내용은 ‘○○○○○ 신규사업 및 센터운영방안 논의’로 하여, 2023. 1. 31. ○○○○○에서 BC카드를 6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업무관련 실습생 포함 ○○○○ ○○○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서명부를 첨부하였으나, 해당 ○○○은 당일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회의참석요청 공문 및 담당자 출장내역 없음) 지출증빙 내역과 다르게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② 회의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지출

테크노파크 ○○○○○팀에서는 2022. 8. 11. 10:30 ‘○○○ ○○ ○○○○ 기술개발 성능평가시험 업무협의’를 연구지원동에서 실시하면서, 테크노파크 직원 3명과 ○○○ 대표 총 4명이 참석하였음에도 다과비¹⁾ 62,580원, 중식²⁾ 48,000원, 총 110,580원으로 회의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하였다.

1) 다과비 지출내역 62,580원 : ○○ ○○○(1) 8,600원, ○○○○ ○○○○(1) 7,960원, ○○○○○(1) 11,960원, ○○○○ ○○○(2) 4,790원, ○○○○○ ○○(1) 2,600원, ○○ ○○ ○○○(1) 26,700원
2) ○○○○○ 48,000원(4개×12,000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팀에서는 2023. 1. 13.(금)(시간 미기재), 참석자는 ○○○○○○ 대표 외 7명, 회의내용은 ‘○○○○○○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로 하여 64,000원의 지출 품의를 냈고, 테크노파크 직원 3명 및 외부인 6명의 서명록을 첨부하여 ○○○○○○○○에서 64,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실제 식사는 3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③ 회의비 지출에 따른 증빙 서류 미비 등

테크노파크 내 회의비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공정회의 등을 제외한 ‘간담회, 업무협의, 논의’와 관련한 회의의 경우, 간담회 실시 및 회의 소집 등의 공문 없이 대부분 회의 당일 지출 품의를 내고, 회의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의(협의) 직전 및 직후 불가피한 식사제공 인지를 알 수 없고,

지출증빙서류에 첨부된 회의록만으로는 회의 목적, 구체적인 내용 및 회의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2년 테크노파크에서 위·수탁사업 수행³⁾에 따른 다과, 중식 및 석식 제공 회의비 지출은 3,228건, 6억 48백만 원, 월 54백만 원(200천 원/건) 정도, 2023년에는 3,261건 8억 66백만 원, 월 72백만 원(266천 원/건) 정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및 테크노파크 「회의비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비 집행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처분 내용을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기관운영에 편성된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제외, 지자체 및 타기관 위수탁 사업에 따른 회의비(직접사업비)만 산출

【일련번호 :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주의

제 목 규정 개정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실)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실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사관리 제 규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등 인사규정 개정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¹⁾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윤리경영, ②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²⁾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89조(징계의 양정기준) 제2항에 따르면 징계양정기준은 인사관리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인사관리 제 규정을 운영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칙」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인사관리 제 규정을 운영하면서 2023. 12. 12.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하도록 정하였음에도, 2024. 1. 17.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관리 규칙」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으나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칙」상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등 14개 유형 중 12개 유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기준과 맞지 않게 「인사관리 규칙」이 운영되고 있다.

2) 2023. 12. 12. 본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 신규 반영

[표 1]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비교표

유형별	(징계규칙 기준) 징계기준	(자체규정 기준) 징계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 해임~정직	감봉~견책 정직~감봉 미반영 정직~감봉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강등~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 해임~정직 파면~해임	정직~감봉 해임~강등 파면~정직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해임~정직	파면~해임 강등~정직	불일치

[출처 :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발췌 및 재구성]

3.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⑤ 보직 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예고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2023년 상반기 직원 승진심사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승진심사 평가항목 중 ‘현직급 재직기간 및 근무성적평정’과 ‘자격취득·교육이수’ 등 승진심사와 관련한 중요 항목에 대해 [표 2]와 같이 배점 및 이수 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공지 절차없이 부적정하게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 승진심사 평가항목표

구분	계	평가항목(정량 60, 정성 40)							가·감점
		재직기간 및 근무성적평정(60)		재단발전 기여도(15)		업무능력, 전문성 및 자격취득·교육이수 등(25)			
		현직급 재직기간	근무성적 평정	재단 위상제고 기여도	재단 예산 등 기여도	업무 이해도 및 추진실적	추진업무 전문성	자격취득 교육이수	표창 및 징계
변경전	100	15	45	10	5	10	10	5 (11시간이상)	-2~3
변경후 (23.상반기)	100	10 (-5)	50 (+5)	10	5	10	10	5 (22시간이상)	-2~3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변경항목 중 ‘현직급 재직기간 및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배점변경 내용은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였어야 할 중요 사항이고, ‘자격 취득·교육이수 실적’ 또한 만점 기준이 11시간 이상 5점에서 22시간 이상 5점으로 변경되면서 이수시간이 2배로 상향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이에 대응하여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임에도, 해당 사항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직원들은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을 위반하여 규정 개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실 ○○○○팀 ○급 ○○○와 인사원칙 사전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실 ○○○○팀 ○급 ○○○(현 ○○○○○팀), 실무책임자 ○○○○실 ○○○○팀 ○급 ○○(현 ○○○○○○팀)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감독책임자 ○○○○실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인사운영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공지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정·현원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단)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단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조직 정·현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V.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직제 규정」 제3조(조직관리)에서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 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직급별·부서별 정원) 제1항 및 제2항에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조직 인력 관리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여 상위직급 위주의 편성이 되지 않게 적절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하고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V.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원칙’ 등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현원과 일치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2021년 19명, 2022년에 13명까지 결원인 상태로 운영하였고, 하위직인 5급의 경우에는 수년간 과원 상태를 지속하여 왔다.

그리고 2023년 ‘경남테크노파크 경영혁신 추진계획(’22.10.20.)’¹⁾에 따른 조직개편 시 전체 정원을 200명에서 190명으로 10명 축소하면서 직급별 인력운영 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 직급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정원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현원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부서장 정원만 1명 증가시키고 5급 정원에 대해서는 11명을 축소함으로써 직급 간 정원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정·현원 현황

연도	구분	합계	원장	부서장	1급	2급	3급	4급	5급
2021	정원	200	1	9	11	34	49	69	27
	현원	181(△19)	1	9	9	21	44	61	36(9)
2022	정원	200	1	9	11	34	49	69	27
	현원	187(△13)	1	9	8	26	47	61	35(8)
2023	정원	190	1	10	11	34	49	69	16
	현원	188(△2)	1	10	8	29	48	69	23(7)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1) 道 ○○○○과에서 시행한 「경남TP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22.8월 완료) 결과에 따른 테크노파크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체계 개선 계획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을 위반하여 정·현원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감독책임자 ○○○○단 ○급 ○○○과 ○○○○실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단 ○급 ○○과 ○○○○실 ○급 ○○(현 ○○○○○○○부)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그리고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정현원의 불일치 상황과 직급 간 정원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실)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실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임·직원 등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직원 채용계획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1)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③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1) 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 후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② 채용계획 수립에 따르면 채용계획에는 채용인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기능)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계획 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테크노파크 「위임전결 규정」 제5조(위임전결대상)에 따르면 팀장 및 팀장 미만 직원 채용 및 배치는 원장의 전결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직원 채용을 하려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해당 채용계획에 대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상남도(○○○○과,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채용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상남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2023년 정규직 및 기간제에 대한 채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한 원장의 사전 결재 없이 경상남도(○○○○과)와 채용 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 문서로 ‘직원 채용 계획(안)’으로 포함하여 ○○○○실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경상남도(○○○○과)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경상남도(○○○○과)와 협의를 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다.

[표 1] 직원 채용 관련 경상남도 협의 후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

연번	채용공고일	협의요청일	계획수립일	위원회개최일	채용 분야	채용인원
계 : 6건						52명
1	2023. 1. 6.	2022. 12. 22.	2022. 12. 26.	2022. 12. 27.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구원 및 사원 등)	12명

연번	채용공고일	협의를요청일	계획수립일	위원회개최일	채용 분야	채용인원
2	2023. 3. 15.	2023. 1. 18.	2023. 2. 2.	2023. 3. 13.	정책기획단장	1명
3	2023. 4. 26.	2023. 4. 20.	2023. 4. 25.	2023. 4. 26.	정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4명
4	2023. 5. 25.	2023. 5. 10.	2022. 5. 23.	2022. 5. 22.	기간제 근로자(전임 연구원 등)	13명
5	2023. 7. 6.	2023. 6. 19.	2023. 7. 6.	2023. 6. 27.	기간제 근로자(사원)	1명
6	2023. 9. 11.	2023. 8. 24.	2023. 9. 3.	2023. 9. 4.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등)	21명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3. 7. 6. 공고한 채용의 경우 [표 2]와 같이 협의 당시 ○○○○(선임 연구원)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을 채용하기로 2023. 6. 19.에 경상남도과 협의하였고, 2023. 6. 27. 인사위원회에서도 직원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음에도 2023. 7. 6. 채용공고에는 ○○○○ 직원을 제외하고 공고 함으로써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2023. 7. 6.에 공고한 ○○○○ 직원(기간제 연구원) 채용 제외 내역

일자	문서 제목	내용
2023. 6. 19.	경남테크노파크인력 채용 협의 요청	- ○○○○ 전임연구원 1명 - ○○○○ 선임연구원 1명 - ○○○○ 사원(운전) 1명
2023. 6. 26.	인사위원회개최 계획(안)	- ○○○○ 전임연구원 1명 - ○○○○ 선임연구원 1명 - ○○○○ 사원(운전) 1명
2023. 7. 6.	재단 신규 직원채용공고 계획(안)	- ○○○○ 전임연구원 1명 - ○○○○ 사원(운전) 1명
2023. 7. 13.	신규직원 퇴사에 따른예비합격자 임용 계획(안)	- ○○○○ 연구원 1명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3.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자격기준 미설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 채용요건·시험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신규채용)에 따르면 신규채용의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인사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칙」 제3조(채용)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지 4>와 같이 하되 채용 모집 직종 및 분야별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지 4>의 자격기준 중 5급 연구원 및 사원의 자격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5급 연구원 및 사원

<p>□ 전공분야 :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기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 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급 이상 경력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경력자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연구소,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행정·전산·기계·전기·건축·토목·통신 등의 분야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출처 :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칙」 발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일정 비율²⁾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격기준을 인사규정에 마련하고 채용하여야 한다.

2) 2022.1.1.부터 2023.12.31.까지 : 1천분의 36, 2024.1.1.이후 : 1천분의 38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1. 6. 직원 채용에서 ○○○○실 5급 사원으로 장애인 체육선수 2명을 채용하면서 ‘경상남도 등록 장애인 선수’로 자격기준을 자체 방침만으로 정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4. 채용공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③ 채용시험의 공고 - 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채용공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공고문에 응시자격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공고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에서는 2023년 정규직 및 기간제에 대한 채용공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4]와 같이 자격기준을 공고하면서 자격기준 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응시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직원채용 자격기준

직 명	자 격 기 준
4급(전임)연구원 및 대리	<input type="checkbox"/> 전공분야 :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 1. 상기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2. 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8년 이상 경력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연구원 및 사원	<input type="checkbox"/> 전공분야 :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 1. 상기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2. 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급 이상 경력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경력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연구소,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행정·전산·기계·전기·건축·토목·통신 등의 분야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출처 : 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칙」 발췌]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규정 및 「인사규정」 제5조 등을 위반하여 직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실 ○○○○팀 ○급 ○○○(현 ○○○○○팀)**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의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실 ○○○○팀 팀장 ○급 ○○(현 ○○○○○○팀)**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장애인 체육선수의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직원 채용 공고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6】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개선·주의

제 목 경남지역 ○○○○ 육성사업 및 ○○○○ ○○○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단)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단에서는 「연구수당 규정」 및 「사업비 운영지침」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단에서는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 ○○○사업화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경남지역○○○○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도내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 운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남지역 ○○○○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 사업 수행체계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경남도(○○○○과)에서는 도내 ○○○○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사업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는 ○○○○ 지정 및 성과관리,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진단실시 등 사업 실무를 총괄하면서 전담 PM(project manager) 및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하여 ○○○○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 육성사업 기업모집 공고 시 평가단계를 요건심사(적합/부적합 평가→현장평가(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발표평가(100점)로 구분하여 발표평가 항목만 세부적으로 안내하면서 ○○○○ 지정 4~5차 년에만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위 지침 및 공고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담 PM 활동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담 PM에게 활동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기업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적합/부적합만 판단하는 요건심사와 사업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하여 시행하였고, 2021년 공고에서는 [표 1], [표 2]와 같이 CEO의 사업추진 의지 등 일부 항목은 발표평가와 중복되게 하였으며, 2022년 공고의 경우 현장평가(20%) 세부 항목을 안내하지 않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현장평가 항목 및 점수

구 분	평가내용(안)	배 점
I. 기본사항	• 제출서류 확인	10점
II. CEO의 협업의지	• 사업추진 분야 경험/지식	10점
	•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 경영철학	20점
III. 사업화 기본역량	• 조직관리현황(연구개발조직 등)	10점
	• 사업운영 현황(인프라 및 제조 환경)	20점
IV. 협업 전략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	20점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10점
합 계		100점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발표평가 항목 및 점수

구 분	평가항목(안)	배 점
I. 협업역량(40)	• 과거 협업 실적	20점
	•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타당성·지속가능성, 주력 산업 파급효과(협업규모) 등	20점
II. 일반역량(30)	• R&D 집중도, 인력, 국내외 특허 등	15점
	• 고용, 매출, 수출증가율	15점
III. 지자체 자율(30)	• (예시) CEO의 사업추진 의지 , 기업인증 여부	15점
	• (예시) 일자리 확대 가능성, 매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15점
합 계		100점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지정 4~5차 년이 되지 않은 기업 6개소에 [표 3]과 같이 해외 전시회 참가비 83.7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표 3]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현황

연번	지원년도	기업명	지원액(백만 원)	○○○○ 지정년도	비고
계 : 6개소			83.7		
1	2022	○○○○○(주)	8.5	2022	
2		(주)○○○○○	17.1	2021	
3		○○○○○○(유)	20.0	2021	
4		(주)○○○○○○○○○○	14.4	2022	
5		(주)○○	9.1	2022	
6	2023	(주)○○○○○	14.6	2021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전담 PM 활동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컨설팅 수행 기관에 전담 PM 활동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전담 PM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 4]와 같이 2021년, 2022년 컨설팅 전체 지원 기업중 30개사 중 22개 기업이 협약서 상 PM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활동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

[표 4] 컨설팅 지원기업 연도별 PM 활동비 지급근거

연도별	지원 기업수	사업비 (백만원)	PM 활동비	협약서상 PM활동비 지급근거(기업수)		비 고
				유	무	
2021	15	1,085	45	4	11	- 사업비는 비R&D 지원액도 포함 - PM활동비는 기업당 2명 지원 (1인 기준 150만 원 지급)
2022	15	1,072	45	4	11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3.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하며,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하고,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하며, 같은 기준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에 따르면 제5조 제1항1)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지역 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과제의 범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출연)과제, 기업 및 기관 수탁과제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사업비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9조(연구수당 지급)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실 집행 인건비의 20% 이하,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실 집행 인건비(현물 포함)의 10% 이하로서 실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 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8호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하고(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과제”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2022. 11. 3. 폐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3호에 따르면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이며, 같은 요령 제11조(직접비 사용) 제13항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기술개발사업이나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연구수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단에서는 연구수당을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경남지역 ○○○○ 육성사업과 ○○○○ ○○○ 사업화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연구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연구수당 및 사업비운영 지출 개정 소홀

그런데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표 5]과 같이 연구수당 규정에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작성 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 연구수당 지급 규정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규정, 경남테크노파크(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과제3. 기업 및 기관 수탁과제

[출처 :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규정 일부 발췌]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은 2022. 11. 3. 폐지되었음에도 2024. 1. 17.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수당 규정 및 사업비 운영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2) 연구수당 예산편성 및 지급 부적정

테크노파크 ○○○○단에서는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규정 및 사업비 운영지침에 의거 ○○○○ 육성사업 및 ○○○○ ○○○ 사업화 지원사업이 연구개발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해당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서 연구지원 업무에 해당함에도 [표 6]과 같이 3년간 연구수당 83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지급 하고 있다.

[표 6] 연구수당 지급내역

<경남지역 ○○○○ 육성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직접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					
	인건비	연구수당		계	기업지원	홍보·인쇄	전문가활용	수수료	연구과제운영 등
2021	250	25	50	1,179	1,103	40	28	2.5	5.5
2022	280	28	50	1,151	1,089	24	25	2.7	10.6
2023	160	16	50	636	545	20	17		54.1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 ○○○ 사업화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구분	직접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인건비	연구수당		기업지원	전문가활용	세미나개최	여비, 회의비, 급량비	기타
2021	50	5	25	395	9	3	7.84	5.16
2022	50	5	25	395	9	3	7.84	5.16
2023	40	4	25	410	9	1	6.85	4.148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 ① 경남지역 ○○○○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한 실무담당자 ○○○○단 ○○○○팀 ○급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지급 규정」을 상위 법령 및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 미흡
소 관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실 8개 부서)
조 치 기 관 경남테크노파크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실 등 8개 실·본부¹⁾에서는 「시설관리 규칙」에 따라 253개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입주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입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테크노파크 「시설관리 규칙」 제4조(관리책무) 제1항 및 제10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관리자²⁾는 임대차 계약 및 일반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자³⁾가 본 규칙이나 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승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 지침」 제5조(준수 의무)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
- 1) ○○○○실, ○○○○○본부, ○○○○○본부, ○○○○본부, ○○○○○본부, ○○○○○본부, ○○○○본부, ○○○○본부
 - 2) 「시설관리 규칙」 제3조(정의)에 따르면 '관리자'는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건물을 관리하는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말함
 - 3) 「시설관리 규칙」 제3조(정의)에 따르면 '입주자'는 재단과 입주 계약을 맺고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말함

법인은 시설의 유지보수 등 건물관리와 법인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임대료, 관리비 징수 등의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설관리 지침」 제46조의4(계약해지 및 퇴거) 제1항 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은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실 등 8개 실·본부에서는 입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 독촉을 하거나 입주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하고,

차후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할 때에는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퇴거 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테크노파크 ○○○○실 등 2개 실·본부⁴⁾에서는 2021. 12. 1. ~ 2024. 1. 16.

4) ○○○○실, ○○○○본부

감사일 현재까지 입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과 같이 ○○○○ 등 2개 입주업체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독촉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길게는 5개월, 짧게는 3개월 이후에서야 납부독촉을 하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무가 부적정하였다.

[표 1]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지연 현황

(단위 : 원)

소관부서	입주업체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내역	연속3개월 미납 도래시점	납부독촉일	납부독촉 지연기간	누적 미납금액	비고
○○ ○○실	○○○○	- 2021년 9월 ~ 12월 - 2022년 4월	2021년 12월	2022. 5.21.	5개월	2,844,490	납부완료 (2022.12.14.)
○○○○ 본부	○○ ○○○○ ○○	- 2022년 6월 ~ 12월	2022년 9월	2022.12.26.	3개월	1,849,776	납부완료 (2022.12.30.)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테크노파크 ○○○○실 등 3개 실·본부⁵⁾에서는 2021. 12. 1. ~ 2024. 1. 16.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 (○○○) 등 4개 입주업체에 차후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면서, [표 2]와 같이 14차례 퇴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입주업체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았음에도 1차례를 제외하고는 즉시 퇴거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총 미회수 채권은 41,620,840원에 달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타 입주업체들을 감안한다면 입주임대료 관리에 형평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 등 2개 입주업체는 여전히 퇴거하지 않고 있어 해당 입주공간에 외부 업체의 입주 기회를 지연시키는 등 건물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지 아니하였다.

5) ○○○○실, ○○○○○○본부, ○○○○○○본부

[표 2]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한 퇴거 조치 절차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소관부서	입주업체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내역	누적 미납금액	퇴거 예고 통보일	퇴거 결정 통보일	비고
○○ ○○실	○○○○ (○○○)	- 2022년 9월 ~ 2023년 2월 (총6월)	9,815,080	2023. 4.24.	미통보	2023. 7.31. (퇴거) / 2023.12.14. (미납액 완납)
		- 2023년 1월 ~ 2월 - 2023년 4월 ~ 6월 (총5월)	9,056,370	2023. 7.28.	2023. 7.31.	
		- 2022년 8월 ~ 12월 (총5월)	9,104,760	2023. 1.27.	미통보	감사일 현재 미퇴거 / 누적 미납액 미회수 (34,591,460)
○○○ ○○○ 본부	○○ ○○○(주)	- 2022년 8월 ~ 2023년 2월 (총7월)	13,519,510	2023. 3.10.	미통보	
		- 2022년 8월 ~ 2023년 4월 (총9월)	17,748,550	2023. 5.15.	미통보	
		- 2022년 8월 ~ 2023년 10월 (총15월)	30,430,690	2023.11.13.	미통보	
		- 2022년 8월 ~ 2023년 12월 (총17월)	34,591,460	2024. 1.10.	미통보	
	○○○ ○○○ ○○	○○○○○ ○○○○○ ○○	- 2022년 4월 6월 7월 - 2022년 10월 ~ 2023년 2월 (총8월)	11,013,420	2023. 3.10.	미통보
- 2022년 4월 6월 7월 10월 11월 - 2023년 1월 ~ 4월 (총9월)			12,858,600	2023. 5.15.	미통보	
- 2023년 6월 ~ 2023년 10월 (총5월)			8,465,260	2023.11.13.	미통보	
○○○ ○○○ 본부	○○○○○ ○○○○○	- 2021년 12월 ~ 2022년 4월 (총5월)	3,441,040	2022. 5.24.	미통보	2023. 7. 7. (퇴거) / 일부 미납액 미회수 (2,506,880)
		- 2022년 8월 ~ 2022년 11월 (총4월)	2,396,260	2023. 1. 9.	미통보	
		- 2022년 8월 ~ 2022년 12월 (총5월)	2,995,540	2023. 1.26.	미통보	
		- 2022년 8월 ~ 2023년 1월 (총6월)	3,645,640	2023. 2.20.	미통보	

[출처 : 테크노파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 ① 「시설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 등을 미흡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본부 ○급 ○○○, 실무담당자 ○○○○○○본부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